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및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 o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
- o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안제7조, 제11조)

- o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안제17조,제18조,제20조)

- o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위원으로 참여 가능)
- o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o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붙임

가.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8조 , 동법시행령제8조

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중 개정준칙안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하며, 동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조제2항과 동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3인 이

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동조동항제1호 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동조동항제2호 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동조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으로, 동조제7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에 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제1호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명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제명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읍·면사무소……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읍·면……	타법 인용 낫표 사용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장소를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정의)…… 1. ……읍·면사무소……	제2조(정의)…… 1.……읍면……	
제3조(원칙)…… 3. ……읍·면사무소……	제3조(원칙)…… 3.……읍·면……	
제4조(설치 등)①…… ……읍·면사무소…… ②생략	제4조(설치 등)①…… ……읍·면…… ②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①생략 ②…·읍·면사무소…… ③생략	제5조(기능)①현행과 같음 ②…·읍·면…… ③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읍·면사무소 …… ②…·읍·면사무소…… ③…… ……읍·면사무소…… ④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읍·면 …… ②…·읍·면…… ③…… ……읍·면……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7조(운영)①……읍·면장이 한다. ②~⑥생략 〈신설〉	제7조(운영)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②~⑥현행과 같음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
제11조(이용 등)①~③생략 ④…그 회복을 위해 변상…… ⑤생략	제11조(이용 등)①~③현행과 같음 ④…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⑤현행과 같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제15조(설치)읍·면사무소……읍·면사무소……	제15조(설치)읍·면……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를 주민자치센터와 동일하게 함.
제17조(구성 등)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선출된 후보자……	제17조(구성 등)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선정된 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1. ····· ·····추천하는 후보자 2. ·····선출된 후보자 ③~④생략 ⑤·····,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 사무소의 관할구역····· ⑥생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 ·····추천하는 자 2. ·····선정된 자 ③~④현행과 같음 ⑤·····,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⑥현행과 같음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④ 생략 〈신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제20조(해촉)①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 ····· ②····· 당연직이 아닌 고문 ·····	제20조(해촉)①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 ····· 심의를 거쳐야한다. 〈단서조항 삭제〉 1. 당해 읍·면 ····· ②·····고문 ····· ·····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삭제